

## < 정 오 표 (1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골든에이지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3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박주호→박상건, 2015.03.24변경)
- C-P1클래스 추가
- 법개정사항 및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1~7. (생략) <신설>	1~7. (현행과 동일) 8. Class C-P1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1~7. (생략) <신설>	1~7. (현행과 동일) 8. Class C-P1 수익증권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7. (생략) <신설>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~7. (현행과 동일) 8. Class C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6.0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1~4. (생략) <신설>	② 1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2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편

		<p>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13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</li> <li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주호</li> </ul> <p>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</li> <li>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상건</li> <li>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li> </ul> <p>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대안투자팀</u>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-P1 가입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</li> <li>- C-P1 보수: 운용(0.65%), 판매(0.6%), 신탁(0.04%), 사무(0.015%)</li> </ul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생략)</li> <li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의 세율로 원천징수</u>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li> </ul> <p>- &lt;신설&gt;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<u>일반법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과 동일)</li> <li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</u>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li> <li>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</u></li> </ul> <p><u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</u>됩니다.</p>

		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 <u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</p> <p>② 과세이연  <u>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</u></p> <p>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<u>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</u>      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(반기)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(생략)          - &lt;신설&gt;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(현행과 동일)         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</p>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<u>12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음</u>

		<p>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13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제1부. 5. 투자운용인력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</p> <p>- <u>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주호</u></p> <p>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</p> <p>- <u>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상건</u></p> <p>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p>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대안투자팀</u>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(사전기준))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1. 보수 및 수수료	<신설>	<p>- C-P1 가입자격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</p> <p>- C-P1 보수: 운용(0.65%), 판매(0.6%), 신탁(0.04%), 사무(0.015%)</p>
제2부. 2. 과세	<p>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<u>법인 14.0%</u>)을 부담합니다.</p> <p>- &lt;신설&gt;</p>	<p>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· <u>법인 15.4%</u>)을 부담합니다.</p> <p>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</u></p> <p><u>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 <p>① 연금계좌 세액공제</p> <p><u>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</u></p>

		<p>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</p> <p>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</p> <p>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	--

## < 정 오 표 (2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골든에이지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3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박주호→박상건, 2015.03.24변경)
- 법개정사항 및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
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추가 사항 반영(클래스 추가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1~4. (생략) <신설>	② 1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u> 11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주호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상건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	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 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	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대안투자팀</u> 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 현황] <신설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 현황] - C-P1 보수: 운용(0.65%), 판매(0.6%), 신탁(0.04%), 사무(0.015%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의 세율로 원천징수</u>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</u>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개정사항 반영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u> 합니다.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		11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1부. 5. 투자운용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주호</u>  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 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상건</u>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 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대안투자팀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(사전기준))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2. 과세	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<u>법인 14.0%</u> )을 부담합니다.	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· <u>법인 15.4%</u> )을 부담합니다.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개정사항 반영

## < 정 오 표 (3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글로벌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(주식)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3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: 박주호→박상건, 2015.03.24변경)
- 법개정사항 및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1~4. (생략) <신설>	② 1~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1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u> 12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주호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박상건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	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 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	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대안투자팀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</u> 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</u> (지방소득세 포함)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</u>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(반기)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
### [간이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

		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1부. 5. 투자운용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생략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주호</u>  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<u>퀀트운용팀</u> 이 담당합니다. (이하 생략)	가. 운용전문인력 - 책임운용전문인력: (현행과 동일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<u>박상건</u> 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 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대안투자팀이 담당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(사전기준))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2. 과세	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<u>법인 14.0%</u> )을 부담합니다.	-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· <u>법인 15.4%</u> )을 부담합니다.